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 기반 블라인드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규모
 - (채용인원) 총 33명

		구 분	직무 내용	인원 33명	채용 형태
	기획	주요정책 수립, 성과관리, 예신	<u>.</u> , 정원, 인사, 채용, 감사 등	1	_
ы	예산	팀장(4급)	기획예산팀 총괄	1	경력
본 부	0.63	수입 및 재산관리, 회계시무(계약	지출결산) 총괄, 교육, 민간지원	2	_
'	운영 지원	변호사(4급상당)	법률 자문 및 지원	1	경력
	시전	회계사(4급상당)	회계 자문 및 지원	1	경력
		노인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 장이	바인활동지원 서비스 등 종합제공	28	_
		센터장(서비스지원4급) (방문간호특화형)	센터운영(경영관리), 방문간호서비스	1	경력
	7.3	센터장(서비스지원4급)	센터운영(경영관리)	4	경력
		파트장(서비스지원5급)	사례관리 및 사무관리(사회복지사)	7	경력
		작업치료사(서비스지원5급)	작업치료, 방문서비스	3	경력
사	종합 재가	물리치료사(서비스지원5급)	물리치료, 방문서비스	2	경력
산 하	세기 센터	간호사(서비스지원5급)	간호수행, 간호행정관리, 방문서비스	6	경력
フ	<u> </u>	영양사(서비스지원5급)	식당 조리업무 및 부대업무, 영양교육	1	경력
관		조리원(서비스지원6급)	조리, 조리기구 및 시설 관리	1	경력
		전산직(서비스지원5급)	본부 및 산하기관 시스템운영관리	1	경력
		사무원(서비스지원6급)	문서작성, 자료관리, 회의운영·지원, 사무행정 업무관리	1	신입
		운전원(기능 다급)	차량점검, 차량운행, 운행관리	1	신입
	어린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		2	
	이집	원장(보육4급)	어린이집 운영 및 경영관리	2	경력

-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동시 진행되는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근무조건

- o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선발 (수습기간 3개월)
 - *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에 따름
- ㅇ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지)
 - 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 산하기관: 서울특별시 內 (세부 주소 미정)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1] 참고)
- ㅇ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ㅇ 2019년 7월 4일부터 근무 및 출퇴근 가능자
- 상기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이를 취소할수 있음

□ 채용형태별 응시 자격요건

- (산하기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동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 본부지원자는 해당사항 없음
- (신입)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경력) 경력직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 및 경력 기준을 별도로 둠 ([붙임 2] 참고)
 -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임용 불가

□ 우대사항

대상	우대자격 요건	가산비율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	회계사, 변호사, 전산직: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증명서		
6 11 L	3조에 해당하는 자	그 외: 필기 1차 전형 만점의 3%	0 TILO 0/1		
사회취약 계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필기 1차 전형 만점의 3%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필기 1차 전형 만점의 3%	주민등록등본 (초본)		
우대 자격증 소지자 및 우대 교육이수 자	■ 우리 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	필기 1차 전형 가점 적용	[붙임 3] 참고		

- ※ 우대 사항과 우대 자격증은 중복 적용되나 최대 10점까지 적용됨
 - 예) 취업지원대상자(10)+사회취약계층(3)+우대자격증[사회복지사 1급(3)]=총 16점이나 최대가점 10점으로 적용
- ※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됨
-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입사지원서의 개명여부에 체크한 후.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 채용전형 일정(안)

구분	추진 일정(안)	결과발표	비고
채용공고	5.20(월)~6.10(월) 10:00	_	_
입사지원서 접수	6.3(월)~6.10(월) 10:00	_	_
서류전형	6.10(월)~6.11(화)	6.12(수)	적부판단
사진 등록 및 수험표 출력	6.12(수)~6.13(목)	_	증명사진 첨부 (6.13(목) 17:00 까지), 필기전형 수험표 필참
편의지원 확인	6.12(수)~6.14(금)	_	장애인 지원자 대상
필기전형 (1차, 2차, 인성검사)	6.15(토)	6.20(목)	
증빙서류 원본 제출	6.24(월)~6.25(화)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
면접전형	6.24(월)~6.25(화)	7.1(월)	
이의신청	각 전형 결과발표 이후		[붙임 5] 참고
채용신체검사 및 임 용등 록	7.1(월)~7.3(수)	_	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진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https://seoul-pass.recruiter.co.kr)를 통해 공지 예정
- ※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 ※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공지 예정
- ※ 면접전형 당일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 등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기본자격, 우대사항,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 사진 등록 후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필기전형 참석 시 수험표 및 신분증 소지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 단계	내용 및 기준	비고	선발인원
서류전형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등		요건 충족자
필기전형 1차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30문항, 40분)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전 지원자 공통	20배수 이내 (단, 1차만 진행하는
(70분)	■직무전공평가(객관식, 20문항, 30분) * 분야별 전공과목 [붙임 4] 참고	직무별 상이	직무의 경우 3배수)
필기전형 2차	■직무적합평가(논술형 주관식, 2문항, 40분) * 사회서비스원 관련 내용	직무별 상이	4급 이상: 5배수
(40분)	(단, 조리원/사무원/운전원은 제외)	[붙임 4] 참고	그 외: 3배수
인성검사 (35분)	■인성검사(객관식) * 사고, 실행, 관계, 조직관리, 자기관리 역량 (단, 조리원/사무원/운전원은 사고, 조직관리		
-	역량 제외)		
역량면접	■4급 이상: 발표면접(50%)+ 경험면접(50%) *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 ■4급(변호사, 회계사) 및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경험면접(100%) *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 ■그 외: 토론면접(50%)+ 경험면접(50%) *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등	직무별 상이 [붙임 4] 참고	1배수 이내

[※] 필기 1차 고득점자 20배수를 선정한 뒤, 20배수를 대상으로 필기 2차 답안 평가 후 고득점자 3~5배수 선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 단계	합격자 결정 기준
	■경력: [직업기초능력(30%) + 직무전공평가(70%)] + 가점
필기전형 1차	■그 외: [직업기초능력(100%)] + 가점 ※ 직무전공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직무는 직업기초능력으로만 100% 평가함 [붙임 4] 참고
필기전형 1차 동점자 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필기전형 2차 채용 미응시
필기전형 2차 	■그 외: [직무적합평가 2문항(70%) + 필기전형 1차 점수(30%)] + 취업지 원대상자 가점 + 장애인 가점(변호사, 회계사, 전산직만 해당)
필기전형 2차 동점자 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4급 이상: [발표면접(50%) + 경험면접(5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4급(회계사, 변호사) 및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경험면접(10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장애인 가점(회계사, 변호사만 해당)
역량면접	■그 외: [토론면접(50%) + 경험면접(5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장애인 가점(전산직만 해당) •과락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점요소에 대하여 최하점(1점 /5점 만점)으로 평점한 경우 또는 모든 면접위원의 전체 평균점수가 중간점 (3점/5점 만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어린이집 원장: ① 우대경력 보유자 > ② 장애인> ③ 취업지원대상자 > ④ 사회취약계층 > ⑤ 청년> ⑥ 필기전형 2차 점수(가점 제외) >
역량면접	⑦ 필기전형 1차 점수(가점 제외)
동점자 처리	■그 외: ① 장애인 > ② 취업지원대상자 > ③ 사회취약계층 > ④ 청년 > ⑤ 우대경력 보유자> ⑥ 필기전형 2차 점수(가점 제외) >
	① 필기전형 1차 점수(가점 제외)

- ※ 모든 전형별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 필기전형 2차 합격자 선정 시 '필기전형 1차 점수'는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를 의미함
- ※ 면접전형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락을 통과한 자에 한해 적용함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 및 지원 방법
 - (공고 기간) 2019. 5. 20(월) ~ 2019. 6. 10(월) 10:00
 - (원서 접수 기간) 2019. 6. 3(월) ~ 2019. 6. 10(월) 10:00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u>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u>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 수 처) 온라인 접수 (https://seoul-pass.recruiter.co.kr)
 -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 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
 - (문 의 처) 온라인 채용페이지 Q&A 또는 담당자
 - ※ 공고 내용 관련: 가급적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FAQ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 02-2038-8673)
 - ※ 채용 시스템 관련 : 시스템 담당자(☎ 070-4139-2022)
 - ※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10:00~18:00(12:00~13:00제외)

□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입사지원서 접수 (온라인 제출)	필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신입 및 경력지원자의 기본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입사지원 홈페이지 가입 시, 자격 증명·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미동의 시 응시 불가
증명사진 등록 (온라인 제출)	필수	■서류전형 합격 후 필기시험 지원자 확인용 증명사진 업로드
	필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최종면접 대상 (원본 제출)	해당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경력직 응시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붙임 3]의 자격증
최종합격자 대상	필수	■기본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취소
- ※ 경력증명서에는 <u>근무기관</u>, 부서, 직위, <u>근무기간</u>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전국 세무서에서 근무사실 확인 후 발급 가능)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경력증명서 外 증빙서류는 증빙서류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6 기타 사항

- 가.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 다. 본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근로계약 이전의 업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에 따름
- 라.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 시점('19. 7. 4)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함
- 바.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사.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jhmeet@seoul.go.kr)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 예정
- 아. 채용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5]를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jhmeet@seoul.go.kr)바람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결격사유

<공통규정>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14.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5.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6.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7.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8.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9.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2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2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2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별도규정>

- 1.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바. 「영유아보육법」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사.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 미성년자

[붙임 2] 직무별 자격요건 및 경력사항

근무지	부서	직위(책)	직급	필수자격					
본부	기 획 예 산	팀장	4급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단체 또는 기업의 전체 근무경력 10년 이상이고, 그 중에 관리자급* 경력 3년 이상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단체 또는 기업의 전체 근무경력 6년 이상이고, 그 중에 관리자급 경력 2년 이상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단체 또는 기업의 전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그 중에 관리자급 경력 1년 이상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일반)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로서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미해당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일반)직 5급 이상 재직 경험이 있거나 6급(상당)으로 5년 이상 근무자로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미해당자 					
				 ※ 관리자급: 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이상 ※ 사회복지분야 경력인정기준: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의 인정대상 경력 준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 경력 					
	운 영	변호사	4급 상당	■ 변호사 자격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지 원	회계사	4급 상당	■ 회계사 자격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센터장		센터장	서비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장 경력 [*] 1년 이상			
	종	(방문 간호 특화형)	지마 지원 4급	 ※ 재가장기요양기관장 경력인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 제공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기관장 경력 					
산 하 기 관	합 재 가 센 터	센터장	서비스 지원 4급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자 중 <u>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u>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u>기관 관리 업무</u> * 경력 3년 이상					
	,		41	※ 관리 업무: 종사자 관리, 사례관리 업무 경력자, 팀장, 제공기관장 경력자					
		파트장	서비스 지원 5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근무 경력 5년 이상자 중 <u>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u>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기관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근무지	부서	직위(책)	직급	필수자격
		작업 치료사	세년 지원 5급	■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물리 치료사	보 원 5급	■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세 지원 5급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세비스 지원 5급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조리원	세비스 지원 6급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해당 업무경력 3년 이상
		전산직	세비스 지원 5급	 정보보안기사 자격증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로서 전산망 구축·운용·관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관리 등 전산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
		운전원	기능 다급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어 린이 집	원장	보육 4급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로서 일반 어린이집 원장 근무 경력 5년 이상 ※ 필수자격조건 충족자 중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이거나 장애 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면접 전형 동점 시 우선 선발)

※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기관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 제공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 2.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019)

인정대상경력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2.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 조건부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으로서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4. 「아동복지법」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 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 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8.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10.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11.「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 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19.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20.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22.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 **25.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붙임 3] 우대자격증 및 우대교육이수

	기획	운영	지원					종합재	가센터					어린이집
자격 목록	이산 예산 팀장 (경력)	변호사 (경력)	회계사 (경력)	센터장 (경력)	파트장 (경력)	작업 치료사 (경력)	물리 치료사 (경력)	간호사 (경력)	영양사 (경력)	조리원 (경력)	전산직 (경력)	사무원 (신입)	운전원 (신입)	원장 (경력)
간호사	-	-	_	-	3	5	5	-	-	-	-	-	-	3
경영지도사	4	-	_	-	-	_	-	-	-	-	-	-	-	-
기업회계	2	-	_	2	2	_	-	-	-	-	-	2	-	2
물리치료사	-	-	_	_	-	4	-	4	-	-	-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_	-	-	-	-	-	-	-	-	1	-	-
사회복지사 1급	3	3	3	-	=	3	3	3	-	-	-	=	-	-
사회복지사 2급	2	2	2	_	-	2	2	2	_	_	_	_	-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3	3	3	3	_	-	-	-	-	3	3	-	3
사회조사분석사 2급	-	1	1	1	1	_	-	-	-	-	1	1	-	1
세무사	5	-	_	-	-	-	-	-	-	-	-	-	-	-
세무회계	2	-	_	2	2	-	-	-	-	-	-	2	-	2
소방안전관리자	_	-	-	2	2	2	2	2	2	2	2	-	2	2
언어재활사 1급	_	-	_	4	4	4	4	4	-	-	-	-	-	-
언어재활사 2급	-	-	_	3	3	3	3	3	-	-	-	-	-	-
영양사	_	-	_	3	3	_	_	-	_	3	-	-	-	3
요양보호사	-	_	=	2	2	3	3	3	-	-	-	=	-	-
워드프로세서	-	-	_	-	-	2	2	2	2	-	-	1	-	-
작업치료사	-	-	-	-	-	_	4	4	-	-	-	-	-	-
전산세무	2	-	-	2	2	_	-	-	-	-	-	2	-	2
전산회계	1	-	_	1	1	=	-	=	=	=	-	1	-	1

	기획	운영	지원					종합재	가센터					어린이집
자격 목록	예산 팀장 (경력)	변호사 (경력)	회계사 (경력)	센터장 (경력)	파트장 (경력)	작업 치료사 (경력)	물리 치료사 (경력)	간호사 (경력)	영양사 (경력)	조리원 (경력)	전산직 (경력)	시무원 (신입)	운전원 (신입)	원장 (경력)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_	_	_	-	-	_	_	_	1	1	_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_	-	-	-	_	-	-	-	1	1	_	-
정보관리기술사	=	-	_	-	_	-	-	-	-	-	1	1	-	-
정보보안기사	=	-	-	-	_	-	-	-	-	-	-	1	-	-
정보보안산업기사	=	-	-	-	_	-	-	-	-	-	-	1	-	-
정보처리기사	=	-	-	-	_	-	-	-	-	-	-	1	_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_	-	-	-	-	-	-	1	-	-
정보통신기사	-	-	-	_	_	-	_	-	_	-	1	_	_	-
조리사	-	-	_	_	_	-	_	_	2	_	_	_	_	-
치매교육(교육이수)	=	-	_	-	_	2	2	2	-	-	-	-	-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_	-	_	-	-	-	-	-	-	1	-	-
컴퓨터활용능력	-	-	_	1	1	-	-	=	1	-	-	1	-	1
특수교사1급	-	-	-	-	_	-	-	=	-	-	-	-	-	4
특수교사2급	-	-	-	-	_	-	_	-	-	-	-	-	_	2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이수)	=	-	-	2	2	3	3	3	-	-	-	-	-	-
회계사	5	=	-		-	-		=			-	-	-	-

[※] 급수가 다른 동일 자격 보유 시 높은 급수만을 인정함(ex.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 모두 보유 → 사회복지사 1급만 인정)

[※] 조리사의 경우, (한식/일식/중식/양식)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등 종류 불문 하나의 자격으로만 인정함

[붙임 4] 전형별 시험과목

7	직위 및 직급	형태	직업기초능력	직무전공평가	직무적합평가	인성검사	면접전형	
	본부							
	기획예산 팀장	경력	0	-	0	0	발표면접+경험면접	
	운영지원							
	변호사	경력	0	-	0	0	경험면접	
	회계사	경력	0	-	0	0	경험면접	
	산하기관							
	종 합 재 가 센 터							
	센터장	경력	0	사회복지행정론(10) 사회복지법제론(10)	0	0	발표면접+경험면접	
	파트장	경력	0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수준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작업 치료사	경력	0	-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물리 치료사	경력	0	-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간호사	경력	0	-	-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영양사	경력	0	-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조리원	경력	0	-	_	0	경험면접	
	전산직	경력	0	-	0	0	토론면접+경험면접	
	사무원	신입	0	-	-	0	경험면접	
	운전원	신입	0	-	-	0	경험면접	
	어린이집							
	원장	경력	0	어린이집운영관리(7) 보육학개론(7) 영유이벌달론(6)	0	0	발표면접+경험면접	

[붙임 5]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 1. 이의신청: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 2. 대 상: 2019년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지원자
- 3. 접수방법: 개인별 이메일 접수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회사 이메일(jhmeet@seoul.go.kr)로 송부
 - hwp 및 서명한 스캔본 pdf 파일 모두 제출

4. 접수기간

- 서류전형: '19.6.12~'19.6.13 18:00
- 필기전형: '19.6.20~'19.6.21 18:00
- 면접전형: '19.7.1~'19.7.2 18:00
- 5. 작성내용: 지원번호(수험번호). 지원분야. 인적사항, 이의신청 사유
- 6. 이의신청서 양식 : 별첨 확인
- 7. 이의제기 처리대상
 -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 이의제기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공개 등이 가능한 경우 답변 가능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필요 시 Q&A 에 이관 후 답변)
 - 관련근거 미제시
- ②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 ③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	을특별시 사	회서비스원 차	용시험 이	의신청서
	지원번호		성명	
신청인	지원분야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이의 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 ·	앙 기 본인은 금번	채용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	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